

흡연, 음주, 비만관련 품목의 국내외 조세제도 동향¹⁾

Taxes on Health-related Goods in Selected Countries

정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 서언

만성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장애와 사망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으며 세계인구의 60%가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고 있다(Sassi and Hurst, 2008). 선진국 및 개도국들의 만성질환에 대한 부담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상당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만성질환의 관리를 위한 정책은 외국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만성질환은 흡연, 과음, 비만 등과 같은 생활습관, 건강행태에서 주로 기인된다. 흡연, 과음, 비만 등은 담배, 술,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 등의 소비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품목의 수요

는 소비자 당사자 뿐 아니라 비소비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부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만성질환 관리를 통한 건강증진의 주요 전략은 건강관련 행태를 변화시켜 질병의 주요 위험요인을 감소시키는 것(정영호 외, 2006)²⁾이라 할 수 있는데, Medlin et al.(2006)³⁾은 건강증진관련 정책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정보, 교육, 홍보캠페인

둘째, 규제정책

셋째, 조세부과 및 보조금 지급

넷째, 재정적 인센티브

그런데, 우리나라의 건강증진 정책을 살펴보면 보건교육, 정보제공, 홍보캠페인 등과 같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전략의 활성화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효과적인 건강증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정책들과 같이 다양하고 종합적인 정책 대안의 모색과 개발이 요구된다. 즉, 건강위험이 높은 행태를 줄이고 건강증진을 위한 행태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정책, 조세정책 등을 고려한 설계가 바람직하다.

최근에 담배세 부과에 대한 논의를 통해 재정 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는 있으나,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건강 위해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체계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이고 다양한 건강증진 정책의 형성을 위한 기초자료가 생산되어 사회적 합의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고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주요 건강위해 요인이라 할 수 있는 흡연, 음주, 비만과 관련된 품목들의 국내외 조세제도 동향을 파악하여 정

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하에 작성되었다.

2. 담배관련 국내외 조세제도

미국의 담배세는 연방단위에서의 담배세와 주 단위에서의 담배세로 나누어진다. 미국은 종량세의 체계를 지니고 있으며 담배 갑당 39센트로 부과되어 시가보다 세율을 높게 부과하고 있다(표 1 참조). 그리고 미국은 주별로 담배세율을 다르게 부과하고 있는데, New Jersey 주에서 가장 높은 담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South Carolina 주에서 가장 낮게 부과하고 있다(표 2 참조).

영국은 2008년 3월에 수입 또는 제조 담배에 대하여 담배세를 증가시켰다. 소매가격의 22%에 담배 1,000개당 £112.07이 부과되며, 시가(cigar)는 kg당 £163.22가 부과된다.

캐나다의 연방정부는 2006년에 Excise Act

표 1. 미국의 연방 담배세

	1000개당 세율	20개 팩당 세율
소형담배(Small Cigarettes)	\$19.50	\$0.39
대형담배(Large Cigarettes)	\$40.95	\$0.82
소형시가(Small Cigars)	\$1.828	\$0.04
	1000개당 세율	개당 세율
대형시가(Large Cigars)	판매가격의 20.719%(단, \$48.75 한도)	최대 \$0.05
	1 lb당 세율	1 온스당 세율
파이프담배(Pipe Tobacco)	\$1.0969	\$0.0686
씹는담배(Chewing Tobacco)	\$0.195	\$0.0122
코담배(Snuff)	\$0.585	\$0.0366
손으로 만 담배	\$1.0969	\$0.0686

자료: Federation of Tax Administrators(www.taxadmin.org)

1) 본 원고는 건강증진연구사업의 지원(건강증진사업: 일반-2008-30)으로 작성된 「미래사회에 대비한 건강증진 재정정책의 방향」 보고서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2) 정영호 외,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결정요인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건강증진사업지원단, 2006.

3) Medlin, Showdhury, Jamison et al., Improving the Health of Populations: Lessons of Experience, Disease Control Priorities in Developing Countries, 2006.

표 2. 미국의 주(州) 담배세: 상위 5개주 및 하위 5개주

주	소비세(율)		
	담배(Cigarettes)		다른 종류의 담배
	(센트/pack당)	순위	
New Jersey	257.5	1	도매가의 30%
Rhode Island	246.0	2	도매가의 40%
Washington	202.5	3	도매가의 75%
Alaska	200.0	4	도매가의 75%
Arizona	200.0	4	Cigars: 44.1¢ Tobacco/Snuff: 23.8¢
Connecticut	200.0	4	도매가의 20%
Maine	200.0	4	Chewing Tob./Snuff: 도매가의 78% Smoking Tob./Cigars: 도매가의 20%
Maryland	200.0	4	도매가의 15%
Kentucky	30	47	도매가의 7.5%
Virginia	30	47	도매가의 10%
Mississippi	18	49	제조가의 15%
Missouri	17	50	제조가의 10%
South Carolina	7	51	제조가의 5%
U. S. Median	100		

주: 2009년 1월 기준
자료: Federation of Tax Administrators(www.taxadmin.org)

표 3. 영국의 담배세 (2008년 3월 현재)

종류	단위	세율
담배(cigarettes)	소매가격기준 22% + 1,000개당	£112.07
시가(cigars)	kg당	£163.22
손으로 만 담배(hand-rolling tobacco)	kg당	£117.32
씹는 담배(chewing tobacco)	kg당	£71.76
기타 담배종류(other smoking tobacco)	kg당	£71.76

자료: 영국 국세청(HMRC) <http://customs.hmrc.gov.uk>

2001을 개정하여 발표하였는데, 담배세와 관련해서는 세율을 변동시키지 않았다. 지역별 담배세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Excise Duty Memorandum 1.1.2에서 제시하고 있다.⁴⁾

4) www.cra-arc.gc.ca/menu/EXMS-e.html

표 4. 캐나다의 담배세

종류	단위	세율	부가세(surtax)
담배(cigarettes)	5개	\$0.41025	n/a
담배스틱(tobacco sticks)	스틱당	\$0.0605	n/a
기타제조담배	kg	\$55.90	n/a
담배잎	kg	\$1.572	n/a
시가(cigars)	1,000개	\$16.60	소매가격의 66%

자료: Excise Duty Notice, 2006.7

일본의 담배세는 국세 담배세와 담배 특별세(special tobacco tax), 지방담배세로 구성된다. 국세 담배세로는 1,000개당 3,552엔이 부과되며 특별담배세로 1,000개당 820엔이 부과된다. 그리고 지방에 따라 1,074엔, 3,298엔이 각각 부과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담배에 담배소비세, 교육세

등의 조세와 각종 부담금 및 기금기여금 등이 부과되고 있다. 담배판매가 2,500원을 기준했을 때,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0.5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54원 등 1,337.5원의 조세 및 부담금과 227.27원의 부가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2004년 12월에 담배 1갑당 세금 및 부담금을 500원 정도 인상한 결과에 의한 것이다.

표 5. 일본의 담배세

종류	단위	국세	특별담배세	도부현세	시정촌세	계
담배(Cigarettes)	1,000개당	¥3,552	¥820	¥1,074	¥3,298	¥8,744
파이프담배(Pipe tobacco)	1,000개당	¥3,552	¥820	—	—	¥4,372
시가(Cigars)	1,000개당	¥3,552	¥820	—	—	¥4,372
각초, 씹는담배, 코담배(Cut, chewing, snuff)	1,000개당	¥3,552	¥820	—	—	¥4,372

자료: 일본 재무성, 2006

표 6. 우리나라의 담배 관련 제세공과금: 2007년

(단위: 원/갑)

	담배가격	비고
담배소비세	641	파이프담배: 1,150원/50그램당 엽결련: 3,270원/50그램당 각련: 1,150원/50그램당
교육세	320.5	담배소비세의 50%

〈표 6〉 계속

	담배가격	비고
공익기금	-	
폐기물부담금	7	
국민건강증진기금	354	
연초생산안정화기금	15	
소계	1,337.5	
부가세	227.27	
총계	1,564.77	
판매가	2,500.00	

다음의 <표 7>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국가들의 담배소매가격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부담률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담배세는 국가별로 종량세나 증가세 또는 이들의 혼합체제로 운용되고 있으며 특정 목적의 목적세나 각종

부담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서구 유럽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조세부담율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OECD 평균인 74.4%보다 낮은 62.7%임을 알 수 있다.

표 7. 담배세의 국제비교 (2007년 2월 현재)

국가	소매가격	종량세	증가세	부가가치세	총세금	세금/가격
프랑스	3.37	0.20	1.95	0.55	2.71	80.4%
포르투갈	2.02	0.79	0.47	0.35	1.60	79.2%
아일랜드	4.75	2.04	0.84	0.82	3.71	78.1%
벨기에	2.69	0.22	1.41	0.47	2.09	77.7%
스페인	1.62	0.11	0.92	0.22	1.26	77.6%
영국	5.23	2.10	1.15	0.78	4.03	77.1%
독일	3.17	1.11	0.80	0.51	2.42	76.4%
폴란드	0.99	0.26	0.31	0.18	0.75	76.2%
핀란드	2.76	0.20	1.38	0.50	2.08	75.4%
이탈리아	2.22	0.08	1.22	0.37	1.67	75.1%
헝가리	1.26	0.39	0.35	0.21	0.94	75.0%
체코 공화국	1.08	0.36	0.27	0.17	0.80	74.2%
덴마크	2.85	1.15	0.39	0.57	2.11	74.0%
오스트리아	2.36	0.33	1.01	0.39	1.73	73.6%
그리스	1.89	0.07	1.02	0.30	1.39	73.5%
네덜란드	2.69	0.98	0.55	0.43	1.97	73.0%

〈표 7〉 계속

국가	소매가격	종량세	증가세	부가가치세	총세금	세금/가격
스웨덴	3.28	0.42	1.29	0.66	2.36	71.9%
룩셈부르크	2.05	0.21	0.97	0.27	1.45	70.6%
슬로바키아 공화국	1.61	0.43	0.37	0.26	1.06	65.8%
한국	1.42	-	0.76	0.13	0.89	62.7%
평균	2.47	0.60	0.87	0.41	1.85	74.4%

주: 한국의 경우 일반적인 담배의 소매가격인 2,500원(2007년기준)에 £1당 1,759원의 환율을 적용한 수치임. 증가세에는 각종 부담금을 포함한 수치임.
 자료: 영국담배제조협회(http://www.the-tma.org.uk), "EU Cigarette Price and Tax Breakdown", 2007. 성명재·박인수(2007)에서 재인용

최근에 정부는 2004년 이후에 500원 정도의 세금 및 부담금 인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도를 몇 차례 하였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담배가격 인상으로 인한 흡연을 감소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세금 및 부담금 인상은 주로 세수확충의 목적이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민희철, 2007).

담배가격인상이 저소득층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득역진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형평성보다는 흡연의 유해성에 기반을 둔 사회적 외부비용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후자를 중심으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이것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건강증진을 위한 조세지출 증가와 담배가격인상으로 인한 흡연율 감소의 근거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담배가격 탄력성의 크기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체계적인 방법론과 실증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서 정책적인 근거 자료를 생산할 필요가 있다.

3. 주류관련 조세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정부가 주류의 제조·판매의 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관리함으로써 주류소비량을 억제 내지는 적정유지를 위해 전매제도를 시행하고 있는가 하면, 주류 전매제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다양한 면허제도, 미성년자의 음주를 방지하기 위한 음주허용연령의 법적 규제, 주류의 무분별한 과소비를 막기 위한 판매시간의 규제 등 각 나라마다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소를 고려하여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 주세와 주(州) 주세로 나누어 부과되며 주정부마다 판매세율은 다소간 차이가 있으며 종량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증류주에 대해서 18개 주에서는 주정부가 소비세대신에 전매제도를 실시하므로 주 단위의 주세는 없다. 와인의 경우에는 4개 주에서 주정부가 전매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표 8. 미국의 연방 주세

종 류	세 금		포장단위당 세금		
	기준(단위)	세금	기준(단위)	세금	
맥주	기본 세율	배럴당(31갤런)	\$18	12 온즈 캔	\$0.05
	200만 배럴 이하를 생산하는 양조자의 최초 6만 배럴까지	배럴당(31갤런)	\$7	12 온즈 캔	\$0.02
	6만 배럴 초과시	배럴당(31갤런)	\$18		
와인	알콜도수 14% 이하	와인 갤런	\$1.071	750ml 병	\$0.21
	14 초과 21% 이하	와인 갤런	\$1.571	750ml 병	\$0.31
	21 초과 24% 이하	와인 갤런	\$3.151	750ml 병	\$0.62
	자연발포(Naturally Sparkling)	와인 갤런	\$3.40	750ml 병	\$0.67
	인공탄산(Artificially Carbonated)	와인 갤런	\$3.301	750ml 병	\$0.65
	사과와인(Hard Cider)	와인 갤런	\$0.2261	750ml 병	\$0.04
증류주	Proof 갤런	\$13.50	750ml 병	\$2.14 (80 proof)	

주: 1 proof 갤런은 100proof 또는 알콜도수 50%인 1갤런과 같음. 세금은 증류주 내 알콜도수에 의해 조정됨.
 자료: Federation of Tax Administrators(www.taxadmin.org)

표 9. 미국의 주(州) 주세 (2008년 1월 현재)

주	맥주		와인		증류주	
	갤런당 소비세율	판매세 적용여부	갤런당 소비세율	판매세 적용여부	갤런당 소비세율	판매세 적용여부
Alabama	\$0.53	Yes	\$1.70	Yes	전매제 실시	Yes
Alaska	1.07	n.a.	2.5	n.a.	\$12.80	n.a.
Arizona	0.16	Yes	0.84	Yes	3	Yes
Arkansas	0.23	Yes	0.75	Yes	2.5	Yes
California	0.2	Yes	0.2	Yes	3.3	Yes
Colorado	0.08	Yes	0.32	Yes	2.28	Yes
Connecticut	0.19	Yes	0.6	Yes	4.5	Yes
Delaware	0.16	n.a.	0.97	n.a.	5.46	n.a.
Florida	0.48	Yes	2.25	Yes	6.5	Yes
Georgia	0.32	Yes	1.51	Yes	3.79	Yes
Hawaii	0.93	Yes	1.38	Yes	5.98	Yes
Idaho	0.15	Yes	0.45	Yes	전매제 실시	Yes
Illinois	0.185	Yes	0.73	Yes	4.5	Yes
Indiana	0.115	Yes	0.47	Yes	2.68	Yes
Iowa	0.19	Yes	1.75	Yes	전매제 실시	Yes
Kansas	0.18	—	0.3	no	2.5	no
Kentucky	0.08	Yes*	0.5	Yes*	1.92	Yes*
Louisiana	0.32	Yes	0.11	Yes	2.5	Yes

〈표 9〉 계속

주	맥주		와인		증류주	
	갤런당 소비세율	판매세 적용여부	갤런당 소비세율	판매세 적용여부	갤런당 소비세율	판매세 적용여부
Maine	0.35	Yes	0.6	Yes	전매제 실시	Yes
Maryland	0.09	Yes	0.4	Yes	1.5	Yes
Massachusetts	0.11	Yes*	0.55	Yes*	4.05	Yes*
Michigan	0.2	Yes	0.51	Yes	전매제 실시	Yes
Minnesota	0.15	—	0.3	—	5.03	—
Mississippi	0.4268	Yes	0.35	Yes	전매제 실시	Yes
Missouri	0.06	Yes	0.3	Yes	2	Yes
Montana	0.14	n.a.	1.06	n.a.	전매제 실시	n.a.
Nebraska	0.31	Yes	0.95	Yes	3.75	Yes
Nevada	0.16	Yes	0.7	Yes	3.6	Yes
New Hampshire	0.3	n.a.	전매제 실시	n.a.	전매제 실시	n.a.
New Jersey	0.12	Yes	0.7	Yes	4.4	Yes
New Mexico	0.41	Yes	1.7	Yes	6.06	Yes
New York	0.11	Yes	0.19	Yes	6.44	Yes
North Carolina	0.53	Yes	0.79	Yes	전매제 실시	Yes*
North Dakota	0.16	—	0.5	—	2.5	—
Ohio	0.18	Yes	0.3	Yes	전매제 실시	Yes
Oklahoma	0.4	Yes	0.72	Yes	5.56	Yes
Oregon	0.08	n.a.	0.67	n.a.	전매제 실시	n.a.
Pennsylvania	0.08	Yes	전매제 실시	Yes	전매제 실시	Yes
Rhode Island	0.1	Yes	0.6	Yes	3.75	Yes
South Carolina	0.77	Yes	0.9	Yes	2.72	Yes
South Dakota	0.27	Yes	0.93	Yes	3.93	Yes
Tennessee	0.14	Yes	1.21	Yes	4.4	Yes
Texas	0.19	Yes	0.2	Yes	2.4	Yes
Utah	0.41	Yes	전매제 실시	Yes	전매제 실시	Yes
Vermont	0.265	Yes	0.55	Yes	전매제 실시	no
Virginia	0.26	Yes	1.51	Yes	전매제 실시	Yes
Washington	0.261	Yes	0.87	Yes	전매제 실시	Yes*
West Virginia	0.18	Yes	1	Yes	전매제 실시	Yes
Wisconsin	0.06	Yes	0.25	Yes	3.25	Yes
Wyoming	0.02	Yes	전매제 실시	Yes	전매제 실시	Yes
Dist. of Columbia	0.09	Yes	0.3	Yes	1.5	Yes
U.S. Median	\$0.19		0.69		\$3.75	

주: * 주 내에서의 판매에 대해서만 판매세 적용
 자료: Federation of Tax Administrators(www.taxadmin.org)

영국은 알코올 도수에 따라 주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2008년 12월부터 증류주에 대해서는 4% 세율을 인상하였으며, 나머지 주류에 대해서는 8%의 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고 있다. 캐나다는 중소기업의 맥주를 생산하는 업체

에 대해서는 연간 생산량에 기초하여 주세를 부과한다. 증류주를 수입한 경우에 대해서는 수입 제품에 대한 특별세율로 리터당 0.12달러가 추가로 부과된다.

표 10. 영국의 주세 (2008년 12월 현재)

품 목	구 분	단 위	세 율
증류주	Spirits	Rate per litre of pure alcohol	£22.20
	Spirits-based Ready to Drinks	Rate per litre of pure alcohol	£22.20
맥 주	Beer	Rate per hectolitre per cent of alcohol in the beer	£16.15
과실주 (사과, 배)	Still cider and perry: 1.2~7.5%	Rate per hectolitre of product	£31.21
	Still cider and perry: 7.5~8.5%	Rate per hectolitre of product	£46.83
	Sparkling cider and perry: 1.2~5.5%	Rate per hectolitre of product	£31.21
	Sparkling cider and perry: 5.5~8.5%	Rate per hectolitre of product	£203.14
와 인	Wine and made-wine: 1.2~4%	Rate per hectolitre of product	£64.65
	Wine and made-wine: 4~5.5%	Rate per hectolitre of product	£88.90
	Still wine and made-wine: 5.5~15%	Rate per hectolitre of product	£209.82
	Wine and made-wine: 15~22%	Rate per hectolitre of product	£279.74
	Wine and made-wine: 22% 초과	Rate per litre of pure alcohol	£23.05
	Sparkling wine and made-wine: 5.5~8.5%	Rate per hectolitre of product	£203.14
	Sparkling wine and made-wine: 8.5~15%	Rate per hectolitre of product	£268.75

주: 알코올도수 22%를 초과하는 와인은 증류주와 같은 단위로 세율 적용
 자료: 영국 국세청(HMRC), www.customs.hmrc.gov.uk

표 11. 캐나다의 주세 (2006년 7월 현재)

종 류	구 분	단 위	세 율
증류주 (Spirits)	완전에틸알콜 7% 미만	ℓ	\$0.295
	완전에틸알콜 7% 이상	ℓ	\$11.696
	특별세율(수입제품)	ℓ	\$0.12
와인	완전에틸알콜 1.2% 미만	ℓ	\$0.0205
	완전에틸알콜 1.2~7%	ℓ	\$0.295
	완전에틸알콜 7% 이상	ℓ	\$0.62

〈표 11〉 계속

종 류	구 분	단 위	세 율
맥주	국내에서 연간 300,000헥토리터 이상 제조하거나 모든 수입맥주	완전에틸알콜 1.2% 미만	\$2,591/hℓ
		완전에틸알콜 1.2~2.5%	\$15.61/hℓ
		완전에틸알콜 2.5% 이상	\$31.22/hℓ
	소규모 국내제조 (완전에틸알콜 1.2% 이하)	생산량 0~2,000헥토리터	\$0.259/hℓ
		생산량 2,001~5,000헥토리터	\$0.518/hℓ
		생산량 5,001~15,000헥토리터	\$1.036/hℓ
		생산량 15,001~50,000헥토리터	\$1.814/hℓ
		생산량 50,001~75,000헥토리터	\$2.202/hℓ
		생산량 75,001~300,000헥토리터	\$2.591/hℓ
	소규모 국내제조 (완전에틸알콜 1.2%~2.5%)	생산량 0~2,000헥토리터	\$1.561/hℓ
		생산량 2,001~5,000헥토리터	\$3.122/hℓ
		생산량 5,001~15,000헥토리터	\$6.244/hℓ
		생산량 15,001~50,000헥토리터	\$10.927/hℓ
		생산량 50,001~75,000헥토리터	\$13.269/hℓ
		생산량 75,001~300,000헥토리터	\$15.61/hℓ
	소규모 국내제조 (완전에틸알콜 2.5% 이상)	생산량 0~2,000헥토리터	\$3.122/hℓ
		생산량 2,001~5,000헥토리터	\$6.244/hℓ
		생산량 5,001~15,000헥토리터	\$12.488/hℓ
		생산량 15,001~50,000헥토리터	\$21.854/hℓ
		생산량 50,001~75,000헥토리터	\$26.537/hℓ
		생산량 75,001~300,000헥토리터	\$31.22/hℓ

자료: 캐나다 국세청, Excise Duty Notice

일본의 주세는 알코올 양에 따라 부과되는 종량세 구조를 지니고 있다. 1989년 조세 개혁당시에 일본 사케와 위스키에 대한 등급체계를 폐지하였으며 현재의 주세율은 다음의 <표 12>와 같다.

우리나라는 주세율이 70%를 초과하는 주류는 주세액의 30%, 주세율이 70%이하인 주류는 주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교육세가 부과되는 종가세 중심의 조세체계를 지니고 있다(표 13참조). 위스키와 브랜디는 1974년에 각각 250%와

160%로 정점에 달했다가 꾸준히 하향조정 되었고 맥주도 1974년에 150%로 피크에 달했으나 그 수준이 하향되어 소주와 위스키 등 모든 증류주와 위스키나 브랜디를 20% 이상 포함한 기타주류, 그리고 맥주의 세율이 72%로 통일되었다.

표 12. 일본의 주세

품 목	구 분	세 율	알코올 1% 증가시 tax 증가율
발포성 주류 (Sparkling Alcohol Drinks)	맥주 등(beer etc.)	¥220,000	
	맥아비율 25~50%인 맥주	¥178,125	
	맥아비율 25%이하인 맥주	¥134,250	
	홉으로 만들지 않은 기타주류(except hop-based liquors)	¥80,000	
양조주 (Fermented Liquor)	일반 양조주	¥140,000	
	정제된 사케(Refined Sake)	¥120,000	
	와인(Wine)	¥80,000	
소주 (Shochu)	일반소주	¥200,000	(알코올 20% 초과시) ¥10,000
	위스키, 브랜디, 증류주(Whisky, Brandy, Spirits)	¥370,000	(알코올 37% 초과시) ¥10,000
기타주류 (Miscellaneous liquor)	일반 기타주류	¥220,000	(알코올 20% 초과시) ¥11,000
	혼합사케(Sake compound)	¥100,000	
	마린(Mirin)	¥20,000	
	과실주 및 리큐르(Sweet wine or Liqueur)	¥120,000	(알코올 20% 초과시) ¥10,000
	분말주류(Powdered Liquor)	¥390,000	

자료: 일본 재무성, Comprehensive Handbook of Japanese Taxes

표 13. 우리나라의 주세 구조

(단위: %)

발효주 세율		증류주 세율	
탁 주	5	증류식소주	72
약 주	30	희석식소주	72
청 주	30	위스키	72
맥 주	72	브랜디	72
과실주	30	일반증류주	72
		리큐르	72

자료: 박상원, 「비관장재관점에서 본 담배·주류·게임 과세」,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2008. 11

4. 비만유발 품목관련 조세제도

비만을 유발하는 품목은 다양하고 여러 형태를 상정할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청량음료, 스낵, 패스트푸드 등을 중심으로 각 국의 조세

제도를 고찰하였다. 식품에 조세를 부과하는 방식은 다음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Caragher and Cowburn, 2005).⁵⁾

- EU에서와 같이 부가가치세(VAT)로, 또는 호주에서와 같이 일반 서비스세(general

service tax: GST)로 부과되는 경우

- 지방함유량이 높은 식품에 VAT를 높게 부과하여 예방을 위해 재원을 활용하는 경우
 - 소비행태에 직접 영향을 주기 위해서 식품 유형별로 직접 조세를 부과하여 예방을 위해 재원을 활용하는 경우
 - 소비행태에 직접 영향을 주기 위해서 식품 유형별로 직접 조세를 부과하지만 재원을 특정 목적을 위해 활용하는 것은 아닌 경우
- 일부 국가에서는 스낵, 아이스크림과 같은 지방함유량이 높은 상품에 대해서 조세를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에는 사탕, 초콜릿, 마가린, 식물성유지에 부가세 20.6%를 부과하는 반면 다른 식품에는 5.5%정도만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Leicester and Windmeijer, 2005)⁶⁾ 캐나다에서는 소프트드링크, 사탕, 스낵에 판매세를 부과하는 반면, 다른 제품에는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미국에서도 소프트드링크, 사탕, 스낵에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세가 'fat tax'로 고안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아직까지는 지방함유량이나 여타의 영양성분에 따라 직접적으로 식품에 조세를 부과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fat tax'에 대한 논의가 세계전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에서는 국민들의 60%가 과체중 또는 비만에 해

당되며 영국정부에서도 비만의 심각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fat tax'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⁷⁾

이와 같은 'fat tax'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명확히 'fat tax'라고 명명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쉽게는 버터, 비스킷과 같은 지방함유량이 높은 제품에 부가세를 높이는 방법이 있다. 이는 Marshall (2000)에 의해 제안되었는데, 만약에 포화지방이 높은 버터, 치즈, 비스킷, 케이크와 같은 제품에 부가세를 높인다면 연간 조기사망자 수를 900~1,000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fat tax'를 부과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는데 첫째, 특정제품형태에 지방 또는 영양성분 함유량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는 방법, 둘째, 지방함유비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

한편, 스낵, 소프트드링크와 같은 제품그룹에 소매가격의 일정비율로 조세를 부과하여 건강에 해가 되는 식품과 건강을 돕는 식품에 가격 차이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French et al(1997)은 3주 동안 자동 판매기의 스낵 중에 지방이 적은 스낵 가격을 50% 낮춘 이후의 소비패턴에 대해 살펴보았다. 총 스낵의 판매량은 변화가 없었지만, 총 판매량 중에 지방이 적은 제품의 비중이 25.7%에서 45.8%로 증가하였고 3주 이후 가격을 다시 원

5) Caragher and Cowburn, Taxing food: implications for public health nutrition, *Public Health Nutrition* 8(8);2005: 1242~1249.

6) Leicester and Windmeijer, The fat tax: economic incentives to reduce obesity, The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Briefing Note No 49.

7) <http://news.bbc.co.uk/1/hi/health/3502053>

래 상태로 되돌린 경우에 판매량은 예전과 유사한 22.8%를 차지하여 가격요소가 소비패턴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Morgan(2003)⁸⁾은 food tax의 예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Arkansas, Washington, West Virginia는 소프트드링크에 특별세(special tax)를 부과하고 있으며 Minnesota에서는 캔디, 껌, 아이스크림에 판매세(sales tax)를, Texas에서는 캔디세(candy tax)를 부과하고 있다.

둘째, Maryland proposal에 의하면, 소프트드

링크를 판매하는 레스토랑에서는 반드시 무설탕 음료를 함께 팔도록 법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위반자의 경우 500달러의 벌금 부과).

셋째, California에서는 비만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 조세를 높이고 있다. 2002년에 소다의 경우 껌당 0.21달러를, 농축식품(concentrate)의 경우 껌당 2달러를 과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soda tax'는 학교에서 소다를 판매하지 않도록 그리고 영양불균형을 개선하고 운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활용된다.

표 14. 현행 청량음료와 스낵 관련 조세

주(state) 또는 지역	법률화/ 유효화된 시기	조세 적용 :과세된 대표 식품	연간 세입(\$)	세입의 사용
Arkansas	1992	액체 청량음료 gal 당 0.21\$; 청량음료 시럽 gal 당 2\$	40,435,799	메디케이드 기금; 1993년 투표에서 세금으로 승인
California	1933	청량음료의 판매세 (7.25%)	218,000,000	일반기금(general fund)
Chicago	1993	용기 판매 3%, 시럽의 9% 도매상이 지불	8,218,975	일반기금(general fund)
District of Columbia	1993	스낵, 청량음료의 판매세(5.75%)	4,000,000	일반기금(general fund)
Illinois	mid-1980s	청량음료 총 판매세(6.25%) (다른 식품은 1%~2% 부과)	69,000,000	일반기금(general fund)
Indiana	1963	사탕, 껌, 청량음료, 병물, 식이보충 식품의 판매세(5%)	43,000,000	일반기금(general fund)
Kentucky	1972	사탕, 껌, 청량음료의 판매세(6%)	34,000,000	일반기금(general fund)
Maine	1991	스낵, 청량음료, 탄산음료, 아이스크림의 판매세(6.5%)	14,600,000	일반기금(general fund)
Minnesota	1982	사탕, 탄산음료, 과일 음료(과일주스 비포함), 껌, 1인분 아이스크림의 판매세(6.5%)	45,000,000	일반기금(general fund)
Missouri	1962	청량음료의 gal 당 0.003 달러	400,000~500,000	일반기금(general fund)
New Jersey	1966	사탕, 탄산음료의 판매세(6%)	67,000,000	일반기금(general fund)

8) Morgan JP, Food Manufacturing: Obesity the big issue, London: JP Morgan European Equity Research, 2003.

〈표 14〉 계속

주(state) 또는 지역	법률화/ 유효화된 시기	조세 적용 :과세된 대표 식품	연간 세입(\$)	세입의 사용
New York	1965	청량음료, 사탕, 과자, 천연 과일 주스가 70% 미만인 과일음료의 판매세(7.5%)	203,000,000	일반기금(general fund)
North Dakota	1985	사탕, 껌, 탄산음료, 70%미만의 청량음료의 판매세(5%)	5,000,000	일반기금(general fund)
Rhode Island	1984	청량음료, 탄산수, 미네랄 물, 소매상에 의해 지급된 맥주의 캔당 0.04달러,	700,000	일반기금(general fund) (본래에 환경, 쓰레기 관리를 위해 책정)
Tennessee	1963	제조사와 bottler에 의해 지급된 청량음료와 그 재료로부터의 총수입액의 1.9%	11,600,000	고속도로 쓰레기 관리에 21%(1981년 초)
Texas	~1961	탄산, 무탄산 청량음료, 사탕, 희석된 주스의 판매세(6.25%)	160,000,000	일반기금(general fund)
Virginia	1977	도매업자와 판매 대리점의 탄산음료 총판매에 대한 소비세	93,000	쓰레기 관리와 재활용 기금
Washington	1989	시럽의 gal당 1 달러	9,500,000	폭력 예방, 약물 강화
West Virginia	1951	탄산, 비탄산 음료, 과일주스, 초코우유의 0.50 당 0.01달러, 제조업자 또는 소매업자에 의해 지급된 시럽의 gal 당 0.8 달러	12,539,000	West Virginia 대학 의료, 치과, 간호대학

자료: Jacobson and Brownell, "Small Taxes on Soft Drinks and Snack Foods to Promote Health",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2000.

위의 예에서와 같이 대부분의 조세는 개별식품의 영양함유량에 따라 부과되기 보다는 식품 유형별로 부과되고 있으며,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학교, 자동판매기 등과 같이 지역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5. 결론

국가 아젠다로서의 건강증진이라는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증

진 정책은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경제적 유인수단인 재정정책의 적절한 활용을 적극 검토하여 종합적인 정책대안의 모색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적으로 건강위해품목의 소비와 생산이 감소하고 건강증진관련 품목의 소비와 생산이 증가하도록 유인하는 건강친화적 조세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하여 조성된 재원은 건강증진이라는 목적 이외에도 재정의 확충, 성장능력 확충(관련분야 R&D 등) 및 일자리 창출, 빈곤예방 및 탈출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목적

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담배, 주류와 같은 비권장재 (demerit goods) 품목과 비만을 유발하는 패스트 푸드, 스낵, 청량음료 등에 대한 외국(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의 조세제도 동향을 정리하여 향후 관련연구나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품목 외에도 우리 주위에는 생활습관과 관련된 건강위해품목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향후에는 이러한 품목들을 소비하는 행위에 대한 적절한 부담이나 행태의 변화를 도모하는 재정정책, 즉

건강친화적 재정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조세 이외의 정책수단에 대한 논의도 병행하여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정책 수행시 해당 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과 소득재분배 등 파급효과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도 필요하다. 건강증진 관련 재정정책 연구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건강친화적 정책방향 설정 및 추진 전략에 대한 기본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문**